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9.04.17. 개정 2020.12.18. 개정 2022.04.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입학전형계획(설치학과 및 모집 인원)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삭제 2013.10.07.>
- ③ <삭제 2013.10.07.>
- ④ 전공심화과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전공심화과정 운영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 ③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2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공정성)

위원회는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입시부정을 방지하고, 학생모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경제적 차이에 따른 특정 학생에 대한 입학 차별정책이 없도록 관리한다.<신설 2012.11.08.>

제6조 (회의 및 의결)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개정 2016.01.05.>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는 전공심화운영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19.04.17., 2020.12.18., 2022.04.11.>

제8조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

- ① 전공심화학위과정 모집학과에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 및 개정을 위한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이하 “편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편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운영학과의 학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2 이상으로 한다.
- ③ 편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7.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